

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15일	
신청인	사업자명			법인등록번호			
	대표자 성명			사업자등록번호			
	소재지			전화번호			
발전지구 명칭					사업 시행기간		
신청 용량					사용전검사일		
사용허가 신청 대상 발전시설 및 설비의 위치 및 면적							
준공인가 전 사용의 필요성							

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2.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3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(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				수수료 없음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→	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→	결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	→	신청인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